

대전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나2535(본소), 2019나2542(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육근우

변론 종결 2020. 3. 31.

판결 선고 2020. 4. 21.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6가단31357(본소), 2018가단 935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9,502,53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와 같은 취지로 선택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설계 · 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제대기 전기공사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합계 62,002,530원(= 서보로봇축대금 49,491,200원 + 인버터대금 3,300,000원 + 신용카드대금 2,211,330원 + 하자보수비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39,502,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20. 제대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3. 30. 포장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은 192,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약정 시공대금 중 미지급 시공대금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잔존 미시공대금이 26,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대금이 22,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13. 30,000,000원, 2015. 7. 10. 1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미지급 시공대금은 22,500,000원(=192,500,000원 - 30,000,000원 - 14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공제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부분

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제대기의 구성 부분인 서보로봇축 시공비용(제대기 4대 기준 49,491,200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서보로봇축을 구성하는 부품 중 기계가 동작하는 레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시공하지 않고 피고가 C으로부터 4,455,000원에 구입한 엑추에이터(20개)를 가지고 피고의 의뢰를 받은 D 직원이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엑추에이터 구입비용 4,455,000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엑추에이터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서보모터와 감속기의 시공 또한 피고가 하였으며, 서보로봇축의 시공은 실질적으로 엑추에이터를 제대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원고가 엑추에이터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서보로봇축의 설치에서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시공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에 기재된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49,491,200원 전부가 그 비용에서 원고가 제공한 부품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서보로봇축을 구성하는 장치 중 일부인 엑추에이터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시공한 점, 엑추에이터는 서보로봇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원고가 엑추에이터 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엑추에이터 구입비용을 제외한 전체 서보로봇축 설치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갑 제6호증의 1, 2,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 기술이사 G은 서보 엑추에이터 장치에 대한 예상 견적금액을 4,5000,000원으로, 그 견적의 비율에 관하여 엑추에이터 35%, 서보모터&감속기 25%, 설치 40%로 제시하면서 현재 적용된 장치 기준으로 엑추에이터 비율이 높아지고 서보모터&감속기 비율이 줄어들 수 있고 설치비용은 상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F은 피고와 이 사건 서보로봇축과 엑추에이터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 의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도 엑추에이터 구입비용 외에 엑추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시공비용으로 얼마나 들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가 엑추에이터 별도 시공을

내세워 시공대금 감액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2016. 7.경까지도 원고의 시공대금 독촉에 대하여 단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 점(갑 제2호증의 1, 2)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액추에이터 구입비용 4,455,000원 외에 나머지서보로봇축 시공비용 전부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그 비용에서 원고가 제공한 부품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인버터대금 부분

피고는, 모터를 제어하는 필수부품인 인버터를 피고가 구입하면 원고가 추후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3,300,000원을 주고 인버터를 구입하였으므로 그 대금도 시공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하자보수비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시공에는 원고의 전기 및 프로그램 등에 미숙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위해 7,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비용도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용카드대금 부분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211,3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211,330원을 시공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15,833,670원(=22,500,000원 - 4,455,000원 - 2,211,3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이경희, 판사 이태영